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조지연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1911

발의연월일: 2024. 7. 18.

발 의 자:조지연・엄태영・박준태

박정하 • 박덕흠 • 장동혁

강대식 • 구자근 • 고동진

주호영 · 강선영 · 윤재옥

임이자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환경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로서 대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 개별소비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러나 국내 총 에너지 소비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 21년 3.6%(2022년 4.66%)으로 OECD 평균 14.9%보다 훨씬 낮으며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최하위 수준으로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를 2028년 12월 31 일까지 4년 연장하려는 것임(안 제109조).

법률 제 호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9조제3항 중 "2024년 12월 31일"을 "2028년 12월 31일"로 하고, 같은 조 제6항 중 "2024년 12월 31일"을 "2028년 12월 31일"로 하며, 같은 조 제9항 중 "2024년 12월 31일"을 "2028년 12월 31일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109조(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	제109조(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		
한 개별소비세 감면) ①・②	한 개별소비세 감면) ①・②		
(생 략)	(현행과 같음)		
③ 제1항은 2009년 7월 1일부	③		
터 <u>2024년 12월 31일</u> 까지 제조	<u>2028년 12월 31일</u>		
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			
는 자동차에만 적용한다.			
④・⑤ (생 략)	④·⑤ (현행과 같음)		
⑥ 제4항은 2012년 1월 1일부	6		
터 <u>2024년 12월 31일</u> 까지 제조	<u>2028년 12월 31일</u>		
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			
는 자동차에만 적용한다.			
⑦・⑧ (생 략)	⑦·⑧ (현행과 같음)		
⑨ 제7항은 2017년 1월 1일부	9		
터 <u>2024년 12월 31일</u> 까지 제조	<u>2028년 12월 31일</u>		
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			
는 자동차에 적용한다.			